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2024. 3. 22.(금)
제 415회 임시회

심 사 보 고 서
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30
----------	-----

2024. 3. 22.(금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이의영 의원 등 7인
나. 발의일자 : 2024년 3월 5일
다. 회부일자 : 2024년 3월 6일
라. 상정일자 : 제415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(2024년 3월 14일 상정의결)
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의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내용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의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
- 또한, 장학생 선발 규정을 신설하고 진흥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및 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내용(안 제4조)
- 장학생의 선발(안 제4조의2)
- 사업계획 승인 등(안 제12조)
-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제재(안 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(필요성) 이 개정안은 진흥원에서 ‘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’ 사업의 입법·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나. (타당성) 또한, 전문개정을 통해 사업 내용을 성격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장학생 선발 시 중복 수혜 방지, 예산서 등의 제출 시기 완화 등은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음

다. (법적합성) 상위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운영지원하는데”를 “운영 지원하는 데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「민법」 중”을 “「민법」 중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사업)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지역 우수 인재 발굴·양성 사업
 - 가. 충북인재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
 - 나.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 및 도민 자녀 장학사업
 - 다. 외국인 유학생 유치·지원 사업
 - 라. 과학·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
 - 마. 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
2.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와 다음 각 목의 사업
 - 가.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·연구·조사·컨설팅
 - 나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
 - 다. 문해교육센터 운영
3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·위탁하는 사업
4.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장학생의 선발) ①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.

②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 시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및 도내 시·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의 장학금 중복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.

③ 장학생의 신청·선발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소속공무원”을 “소속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2개월”을 “1개월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다음연도 2월말”을 “다음 연도 2월 말”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지도감독)”을 “(지도·감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진흥원운영”을 “진흥원 운영”으로, “지도감독”을 “지도·감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”을 “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”으로 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거짓 보고”를 “거짓 보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승인없”을 “승인 없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진흥원 운영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 우수 인재 발굴·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<u>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</u>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<u>운영지원하는데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등기) ① (생략)</p> <p>②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4조(사업) <u>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충북인재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</u> 2. <u>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</u> 3. <u>과학·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</u> 4. <u>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</u> 5. 「<u>평생교육법</u>」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 6. <u>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</u> 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운영 지원하는 데</u> ----- -----.</p> <p>제3조(등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「<u>민법</u>」 <u>중</u> -----.</p> <p>제4조(사업) <u>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지역 우수 인재 발굴·양성 사업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<u>충북인재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</u> 나. <u>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 및 도민 자녀 장학사업</u> 다. <u>외국인 유학생 유치·지원사업</u> 라. <u>과학·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</u>

현행	개정안
<p><u>발·연구·조사·컨설팅</u></p> <p><u>7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</u></p> <p><u>8. 문해교육센터 운영</u></p> <p><u>9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·위탁하는 사업</u></p> <p><u>10.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6조(조직 및 운영) ① ~ ③ (생략)</p>	<p><u>마. 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</u></p> <p><u>2.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와 다음 각 목의 사업</u></p> <p><u>가.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·연구·조사·컨설팅</u></p> <p><u>나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</u></p> <p><u>다. 문해교육센터 운영</u></p> <p><u>3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·위탁하는 사업</u></p> <p><u>4.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</u></p> <p><u>제4조의2(장학생의 선발) ①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.</u></p> <p><u>②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 시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및 도내 시·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의 장학금 중복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.</u></p> <p><u>③ 장학생의 신청·선발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제6조(조직 및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④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<u>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토록</u> 할 수 있다.</p>	<p>④ ----- ----- <u>소속</u> <u>공무원</u>----- -----.</p>
<p>⑤·⑥ (생략)</p>	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회계연도)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<u>의한다</u>.</p>	<p>제11조(회계연도) ----- ----- <u>따른다</u>.</p>
<p>제12조(사업계획 승인 등)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<u>2개월</u>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	<p>제12조(사업계획 승인 등) ----- ----- ----- <u>1개월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(결산서 제출 등)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<u>다음연도 2월 말</u>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결산서 제출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다음 연도 2월 말</u>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<u>지도감독</u>) ① 도지사는 <u>진흥원운영</u>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업무,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<u>지도감독</u>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<u>지도·감독</u>) ① ----- <u>진흥원</u> <u>운영</u>----- ----- ----- <u>지도·감독</u>-----.</p>
<p>② 도지사는 <u>제1항</u> 규정에 의한</p>	<p>② ----- <u>제1항에 따른 지도·감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지도감독 결과 위법·부당한 사항</u>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</p>	<p><u>독</u> ----- -----.</p>
<p>제15조(진흥원에 대한 제재) 도지사는 진흥원이 다음 <u>각호</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(진흥원에 대한 제재)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(생략)</p> <p>2.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<u>거짓보고</u>를 하였을 때</p> <p>3. 도지사의 <u>승인</u>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거짓</u> <u>보고</u>-----</p> <p>3. ----- <u>승인</u> 없----- -----</p> <p>4. <u>그 밖에 진흥원 운영 등에 중</u> <u>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</u>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평생교육법

제20조(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) ①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
2. 평생교육 상담
3.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
- 3의2.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
4.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
5. 국가 및 시·군·구 간 협력·연계
6.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□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
제2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·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, 학술, 자선(慈善)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(이하 “공익법인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